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7
----------	-------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구현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별 소속과를 연계관계가 있는 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신설과를 만들어 업무를 개편함.(안 제4조~제8조)

(1) 행정관리국 :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민원여권과

- 소관사무 중 “신청사건립 예산, 설계변경, 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2)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전산정보과·세무1과·세무2과

- 소관사무중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주민생활국 :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

(4) 도시관리국 : 주택과 · 도시계획과 · 도시경관과 · 건축과 · 지적과 · 공원녹지과

(5) 건설교통국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치수과
- 소관사무중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전거교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신설

나. 보건소 분장사무 및 직제를 조정함(안 제9조~제12조)

(1) 보건소 :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2)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규정함

다. 식품안전추진반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제11조의2(한시기구)를 삭제한다.

라. 기구재설계에 따른 관련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개정방식으로 개정

3. 개정근거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총무과-16253(2010.09.29)호)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근거

- (1) 지방자치법(2010.6.8 법률 제10344호)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9.1 대통령령 제22356호)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9. 29. ~ 10. 5.(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10.07)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내지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산정보과”를 “생활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의2호 및 제36호, 제36의2호를 삭제하며, 제36의4호, 제36의5호, 제36의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4.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36의5.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6의6.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재무과·세무1과”를 “재무과·전산정보과·세무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를 “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를 “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제2항제30호 중 “수방”을 “풍수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5호 및 제36호를 삭제하며,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자전거교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제9조 중 “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로, “둔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를 “총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16.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1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제10조제4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환경개선팀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활고용지원팀장”을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제10조제8항 중 “의약과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의무팀장”을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의무팀장”을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산정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의 주관국란 중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국(복지행정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내지 제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내지 제8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 -----</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공보관광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전산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08.2.14) ② (생략) 1.~7.(생략) 7의2 신청사건립관련 예산, 설계변경, 현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 8.~35.(생략) 36.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36의2.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36의3.(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공보관광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생활안전과·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7의2 <삭 제> 8.~35.(현행과 같음) 36. <삭 제> 36의2 <삭 제> 36의3.(현행과 같음) 36의4.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36의5.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6의6.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② (생략) 1.~40.(생략) <u><신 설></u></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전산정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40.(현행과 같음) <u>41.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u>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6조(주민생활국) ① 주민생활국에 <u>복지행정과·일자리진흥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u>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u>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공원녹지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u>도시경관과·건축과·지적과·공원녹지과</u>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 및 <u>치수방제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29.(생략)</p> <p>30. <u>수방대책에 관한 사항</u></p> <p>31~34.(생략)</p> <p>35. 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p> <p>36. 재난 대응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p> <p><u><신설></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설관리과·토목과·<u>치수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29.(현행과 같음)</p> <p>30. <u>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u></p> <p>31~34.(현행과 같음)</p> <p>35. <삭제></p> <p>36. <삭제></p> <p>37. <u>자전거교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리</u></p>
<p>제3장 보건소</p>	<p>제3장 보건소</p>
<p>제9조(설치) <u>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둔다.</u></p>	<p>제9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p>
<p>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p> <p>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 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 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을 수행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직제 및 업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둔다.</p> <p>②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제11조의2(한시기구)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2010.12.31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u></p> <p><u>제12조(직제 등)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u>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u></p> <p><u>16.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u></p> <p><u>1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u></p> <p><u>제11조의2<삭제></u></p> <p><u>제12조<삭제></u></p>